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631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7월 9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붙임 : 주요 개정내용

I. 개정취지

국제규격(IEC)과 부합화하여적용중에있는전기용품안전기준(연역오류및 오자·탈자등)을바로잡고, 음식물처리기에탈수기능, 교반기능, 건조기능에 대한시험방법을추가하는등 안전기준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 위하여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을다달리 개정하고자함

II. 주요내용

1.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의전기레인지(K60335-2-6)치형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이와유사한전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의오자·탈자를수정하고자함
2. [별표2] 참고적용안전기준의음식물처리기(K60335-2-16)음식물처리기에대한 개별요구사항을 [별표]강제적용안전기준으로변경하고, 2.2.9제품의기능(분쇄, 교반, 발효, 건조)별로통상동작방법을시하고.

7.12에 “음식물쓰레기를처리하는기기는1회에처리할수 있는최대중량(kg)을사용설명서에표시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10.1패0.2의 “대표적인주기”를 “분쇄기능만을가진기기의대표적인주기는대표적인 주기로 변경하며, 11.7에 “탈수용식물쓰레기를처리하는기기는정격시간이제시된경우에는정격 시간당휴지시간을분을갖고5회 동작시킨다. 정격시간이제시되지않을경우4분 동작1분 휴지로5회 동작 시킨다.”를 추가하고, 11.8에 “통상동작에는음식물쓰레기가연소되지않아야한다.”를 추가하고, 19.7에 “탈수용식물쓰레기를처리하는기기는적용하지않는다.”를 추가하고, 20.102. 20.103. 20.104. 20.105. 20.106. 22.105. 24.102 등을신설하고, 기타오자?탈자를수정함

3.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의전기오븐레인지K60335-2-36상업용디스펜싱기및 자동판매기에대한개별 요구사항의 15.2의 1ℓ 의냉수를1분간일정하게석쇠판의표면의중심에붓는다.”를 “1ℓ 의차가운소금 물을1분간일정하게오븐과달걀진부분의바닥표면위에붓는다. 그리고griddle판을내장하는기기는약 1ℓ 의차가운소금물을1분간일정하게그리들griddle판표면의중심에붓는다”로 변경하고, 기타오자?탈 자를수정함

4.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의대류형오븐K60335-2-42상업용전기강제대류형오븐, 스팀형조리기및 스팀대류형오븐기의개별요구사항의오자?탈자를수정함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6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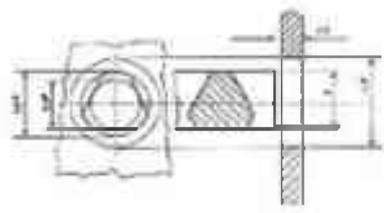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13조(승강기의검사)제4항및 동법시행령제14조의2(검사의기준· 항목및 방법등)의규정에의하여승강기검사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10일
기술표준원장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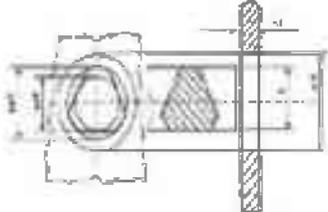
현행	개정
<p>3.1.1(2)㉔ 급제동시나지진기타의진동에해주로프가벗겨질 우려가있는 경우에는로프이탈방지장치등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기계실에설치된고정도르래의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p>	<p>3.1.1(2)㉔ 급제동시나지진기타의진동에의해주로프가벗겨질 우려가있는 경우에는로프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기계실에설치된고정도르래또는도르래 홈에 주로프가1/2이상 묻히거나도르래의결단의 높이가주로프보다더 높은 경우에는제외한다</p>
<p><신설></p>	<p>3.1.2(6)㉔ 승강장문의조립체는KS B EN 81-1 부속서의 소프트웨어시험방법에따라450의 운동에너지충격을 가하였을때 문의이탈없이견딜 수 있어야한다. 다만 전망을목적으로유효출입구면적의50%이상을 접합유리로설치하는경우운동에너지를308로 적용할 수 있다. 현장시험이불가한경우에는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승강기검사기관의안전성평가등으로확인할수 있다. 화물용은제외한다</p>
<p><신설></p>	<p>3.1.2(6)㉕ 승강장문가이드슈는문턱에양호하게맞물려야한다. 이 확인을위해 제조사는3.1.2(6)㉔에 의한충격시험시 확인된승강장문가이드슈의문턱의맞물림깊이에 대해 검사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화물용은제외한다.</p>

현행	개정
<p>3. 1. 3(6)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 거리는 다음 각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카도어 록이 설치되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경우 또는 <u>화물용 엘리베이터</u>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 수평 거리는 25mm 이하이어야 하며, 출입구 2개인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각각의 출입구에 대하여 125mm 이하이어야 한다.</p> <p>② 수평 거리가 25mm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속제 판 등으로 최상정지층의 바닥 아래에서 최하정지층의 출입구 상부까지 출입문을 제외 한 카 출입구에 면하는 전체 부분에 대하여 보호면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헤더 케이스 상부와 보호면 하단까지의 틈새는 38mm 이하이어야 하나, 보수관리 상부 특이한 경우에는 100mm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출입문이 상승 개폐문 또는 상하 개폐문 일때에 출입문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면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출입구 2개인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승강로 출입구가 없는 부분과 정지하지 않는 층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면을 설치하여야 한다.</p>	<p>3. 1. 3(6)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 거리는 다음 각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카도어 록이 설치되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경우 또는 <u>화물용 자동차용 제외 엘리베이터</u>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 수평 거리는 25mm 이하이어야 하며, 출입구 2개인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각각의 출입구에 대하여 125mm 이하이어야 한다.</p> <p>② 수평 거리가 25mm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속제 판 등으로 최상정지층의 바닥 아래에서 최하정지층의 출입구 상부까지 출입문을 제외 한 카 출입구에 면하는 전체 부분에 대하여 보호면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헤더 케이스 상부와 보호면 하단까지의 틈새는 38mm 이하이어야 하나, 보수관리 상부 특이한 경우에는 100mm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출입문이 상승 개폐문 또는 상하 개폐문 일때에 출입문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면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u>항삭제</u></p>
<p>3. 1. 6(2)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서는 특수한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밖에서 승강로의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p>	<p>3. 1. 6(2)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서는 특수한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밖에서 승강로의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 출입문을 개방</p>

현행	개정
	<p>하기위한장치는그림4에 규정된삼각형의잠금해제 장치의규격에적합하여야한다.</p> <p>또한 특수한키에는사용상의위험과승강장문이닫힌 후 문의잠금여부를확인해야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한다.</p>  <p>치수는밀리미터(mm) 그림4 열쇠구멍 (unlocking triangle)</p>
<p>3. 1. 6(19) 엘리베이터를주기적으로사용 정지하는경우에는파킹스위치를설치하여야한다. 파킹스위치는다음 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이하생략)</p>	<p>3. 1. 6(19) 엘리베이터와안정된사용및 정지를위하여파킹스위치를설치하여야하며다음 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공동주택숙박시설의료시설은제외할수 있다. (이하생략)</p>
<p>3. 1. 11(7) 카는 반드시모든 승강장의출입구마다정지할수 있어야한다.</p>	<p>3. 1. 11(7) 카는비상운전시반드시모든승강장의출입구마다정지할수있어야한다.</p>
<p>3. 3. 1(2) 에스컬레이터의경사도는30°이하로하여야하고, 수평보행기의경사도는12°이하로하여야한다. 다</p>	<p>3. 3. 1(2) 에스컬레이터의경사도는30°이하로하여야하고, 수평보행기의경사도는12°이하로하여야한다. 다만, 이</p>

현행	개정
<p>만. 에스컬레이터의층고가6m 이하일때에는35°이하로할 수 있으며, 수평보행기외딴면이고무제품등미끄러지기어려운구조일경우에경사도를15°이하로할수있다.</p>	<p>스컬레이터의층고가6m 이하일때에는35°이하로할 수 있으며, 수평보행기외딴면이고무제품등 미끄러지기어려운구조일경우에는경사도를15°이하로할 수 있다. <u>다만 승강기구조상현장 확인이불가능한 경우설계서나공인기관의시험성적서로확인할수있다.</u></p>
<p>3. 4. 2(1) 카에는1개의출입구만을설치하여야한다. <u>다만 출입구가동시에개방될때 경보버저기작동하도록하는동안전상의필요한조치를강구한경우에는2개의출입구를설치할수 있다.</u></p>	<p>3. 4. 2(1) 카에는2개의출입구를설치할수 있다.</p>
<p>3. 4. 2(3) 1개층에대한출입구는카1대에 대하여2개 이상설치하지않아야한다. <u>다만 출입구가동시에개방될 때 경보버저기작동하도록하는동안전상의필요한 조치를강구한경우에는2개의출입구를설치할수있다.</u></p>	<p>3. 4. 2(3) 카1대에대하여1개층에2개의출입구를설치할수 있다. <u>다만 승강장출입문이동시에열릴때 경보버저기작동하도록하는동안전상의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u></p>
<p>3. 4. 5(5) <u>점검구의폭 및 높이는각각60cm 이상으로하여야한다. 다만, 기기의배치및 관리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또한, 점검구에뿔금장치를갖춘금속제의문을설치하여야한다.</u></p>	<p>3. 4. 5(5) <u>기계실출입구의폭 및 높이는각각60cm 이상으로하여야한다. 다만, 기기의배치및 관리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또한, 기계실출입구에는잠금장치를갖춘금속제문을설치하여야한다.</u></p>

현행	개정
<p>3. 4. 5(6) 유지관리상지장이없도록기계실의<u>절검구</u>에이르는 통로를확보하여야하며. 다음각항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p>	<p>3. 4. 5(6) 유지관리상지장이없도록기계실의<u>출입구</u>에이르는 통로를확보하여야하며. 다음각항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p>
<p>3. 4. 6(2) 카가 정지하고있지않은층에서는특수한키를사용하지않으면밖에서승강로<u>출입문</u>을열수없도록 하는<u>장치</u></p>	<p>3. 4. 6(2) 카가 정지하고있지않은층에서는특수한키를사용하지않으면밖에서승강로의출입문을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설치하여야하며 승강장출입문을개방하기위한장치는그림4에 규정된삼각형의잠금해제 장치의규격에적합하여야한다. 또한 특수한키에는 사용상의위험과승강장문이닫힌 후 문의잠금여부를 확인해야하는등의주의사항이표시 되어야한다.</p> <div data-bbox="798 1030 1165 1276" data-label="Image"> </div> <p style="text-align: center;">치수는밀리미터(mm) 임 그림4 열쇠구멍(unlocking triangle)</p>
<p>3. 5. 6(2) 카가 정지하고있지않은층에서는특수한키를사용하지않으면밖에서승강로<u>출입문</u>을열수없도록 하는<u>장치</u></p>	<p>3. 5. 6(2) 카가 정지하고있지않은층에서는특수한키를사용하지않으면밖에서승강로의출입문을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설치하여야하며 승강장출입문을개방하기위한장치는그림4에 규정된삼각형의잠금해제</p>

현행	개정
	<p>장치의규격에적합하여야한다. 또한 특수한키에는 사용상의위험과승강장문이닫힌후 문의잠금여부를 확인해야하는등의주의사항이표시되어야한다.</p>  <p>치수는밀리미터(mm)임 그림4 열쇠구멍(unlocking triangle)</p>
<p>4. 1. 1(4) 하중시험은다음3가지경우에대하여각기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속도및 전류를측정하여표 4의규정에적합하여야한다.</p> <p>①하중을실지않은경우 ②정격하중의00%의하중을실은경우 ③정격하중의10%의하중을실은경우</p>	<p>4. 1. 1(4) 하중시험은아래3가지경우에대하여각기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속도및 전류를측정하여표 4의 규정에적합하여야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중을실지않은경우 - 정격하중의00%의하중을실은경우 - 정격하중의10%의하중을실은경우
<p>4. 1. 1(6) 카 내에65kg의 하중을싣고, 가능한최저속도보다 음①및②의사항을검사한다.</p> <p>(이하생략)</p>	<p>4. 1. 1(6) 카 내에65kg의 하중을싣고, 가능한최저속도보다 음①및②의사항을검사한다다만 정기검사시에는하중을싣지않고검사할수있다.</p> <p>(이하생략)</p>

현행	개정
<p>4. 1. 2(1) <u>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가 도어 록이 설치된 경우나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제외는 125mm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출입구가 2개인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각각의 출입구 쪽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가 25mm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u></p>	<p>4. 1. 2(1) <u>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카도어 록이 설치되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경우 또는 화물용 자동차용 제외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① 수평거리가 25mm 이하이어야 하며 카에 출입구가 2개인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각각의 출입구에 대하여 125mm 이하이어야 한다.</p> <p>② 수평거리가 25mm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속제 판등으로 최상정지층의 바닥 아래에서 최하정지층의 출입구 상부까지 출입문을 제외 한 카 출입구에 면하는 전체 부분에 대하여 보호면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더 케이스 상부와 보호면 하단까지의 틈새는 38mm 이하이어야 하나 보수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00mm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출입문이 상승개폐문 또는 상하개폐문일 때에 출입문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면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4. 1. 3(8)① <u>주 로프의 바빗트 채움 끝부분은 각 가닥을 접어서 구부린 것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되어야 한다.</u></p>	<p>4. 1. 3(8)① <u>로프의 단말은 견고히 처리되거나 또는 주 로프가 바빗트 채움 방식인 경우 끝부분은 각 가닥을 접어서 구부린 것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되어야 한다.</u></p>
<p>4. 1. 3(10) <u>과부하 감지 장치 가 위 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u></p>	<p>4. 1. 3(10) <u>과부하 감지 장치는 기계설 또는 카 위 설치 가능하며</u></p>

현행	개정
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각경우에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4. 1. 3(10)㉔ 엘리베이터의주행중에는오동작을방지하기위하여과부하감지장치와의동이무효화되어야한다.	4. 1. 3(10)㉔ 엘리베이터의주행중에는오동작을방지하기위하여과부하감지장치와의동이무효화되어야한다. <u>검사시 이 기능의현장확인불가능한경우 제조사의설계서 등으로확인할수있다.</u>
<신설>	4. 1. 3(18)㉔ <u>승강장문의가이드슈는3.1.2(6)④에의한충격시험시 확인된깊이이상문턱에맞물려야한다. 화물용은제외한다</u>
4. 1. 5(1)㉔ 제1항이외의문의 경우에는는2cm 이내까지닫혀졌을때 기동하고, 승강장에서5cm 이상열려지지않아야한다.	4. 1. 5(1)㉔ 제1항이외의문의 경우에는는2cm 이내까지닫혀졌을때 기동하고, 승강장에서5cm 이상열려지지않아야한다. <u>다만 화물용도 상승개폐문의경우5cm 이내까지닫혀졌을때 기동하고승강장에서5cm 이상열려지지않아야한다.</u>
<신설>	4. 1. 5(14) <u>카가 정지하고있지 않은 층에서승강로의출입문을 열수있는특수한키에는사용상의위험과승강장문이 닫힌후 문의 잠금여부를확인해야하는등의 주의사항이표시되어야한다.</u>

현행	개정
<p>4. 2. 1(4) 하중시험은다음각항의경우에대하여정격전압및정격주파수에서속도및전류를측정하여표8의규정에적합하여야한다.</p> <p>①정격하중의100%의하중을실은경우 ②정격하중의10%의하중을실은경우 (이하생략)</p>	<p>4. 2. 1(4) 하중시험은아래의경우에대하여각기정격전압및정격주파수에서속도,전류및작동압력을측정하여표8의규정에적합하여야한다.</p> <p>- 정격하중의100%의하중을실은경우 - 정격하중의10%의하중을실은경우 (이하생략)</p>
<p>4. 2. 1(6) 카내에65kg의하중을싣고,가능최저속도로부터①및②의사항을검사한다.</p>	<p>4. 2. 1(6) 카내에65kg의하중을싣고,가능최저속도로부터①및②의사항을검사한다다만정기검사시에는하중을싣지않고검사할수있다</p>
<p>4. 3. 2(3) 상하승강장의기동스위치·정지스위치·비상정지버튼스위치및신호스위치등의작동상태는양호하여야한다.</p>	<p>4. 3. 2(3) 상하승강장의기동스위치·정지스위치·비상정지버튼스위치등의작동상태는양호하여야한다.</p>
<p>4. 3. 2(4) 이동식핸드레일은디딤판과동일방향및동일속도로승강하여야한다.</p>	<p>4. 3. 2(4) 이동식핸드레일의경우,운행전구간에서디딤판과핸드레일의속도차는0~2%이하이어야한다.</p>
<p>4. 3. 2(5) 이동식핸드레일은하강운전중상부승강장에서약15kgf(147N)의인력으로수평으로당겨도정지하지않아야한다.</p>	<p>4. 3. 2(5) 이동식핸드레일은하강운전중상부승강장에서수평으로약147N정도의사람의힘으로당겨도정지하지않아야한다.</p>

현 행	개 정
<p>4. 4. 2 유압식인 경우에는 다음 이외에 4.2.3(5)를 추가하여 검사한다.</p>	<p>4. 4. 2 <u>4.1.5(14)에</u> 따르고 유압식인 경우에는 다음 이외에 4.2.3(5)를 추가하여 검사한다.</p>
<p>4. 5. 5 4.1.5(1)~(5)((3) 제외)에 따른다.</p>	<p>4. 5. 5 4.1.5(1)~(5)((3) 제외).<u>(14)에 따른다</u></p>
<p><신설></p>	<p><u>3.9항 7.2.4 충격강도</u> 승강장문의 조립체는 KS B EN 81-1 부속세의 소프트웨어 시험 방법에 따라 450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하였을 때 문의 이탈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전망을 목적으로 유효 출입구 면적의 50% 이상을 접합유리로 설치하는 경우 운동에너지를 0.8로 적용할 수 있다. 현장시험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 승강기 검사기관의 안전성 평가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화물용은 제외한다</p>
<p><신설></p>	<p><u>3.9항 7.4.2.4</u> 승강장문 가이드 슈는 문턱에 양호하게 맞물려야 한다. 이 확인을 위해 제조사는 3.1.2(6)④에 의한 충격시험시 확인된 승강장문 가이드 슈의 문턱의 맞물림 깊이에 대해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용은 제외한다</p>
<p>3.9항 7.4.2.1 <u>승강장문은 정상운전중에 이탈 기계적끼임 또는 동작 끝단에서의 벗어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이드가 마모, 부식 또는 화재로 인해 못쓰게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승강장문을 제 위치에 유지하여야 한다.</u></p>	<p>3.9항 7.4.2.1 <u>승강장문은 정상운전중에 이탈 기계적끼임 또는 동작 끝단에서의 벗어남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u></p>

현행	개정
<p>3.9항 9.9.1 카 비상정지장치를위한 조속기는 정격속도의 115% 이하의속도및 다음의속도미만에서작동되어야한다. (이하생략)</p>	<p>3.9항 9.9.1 카 비상정지장치작동을위한 조속기는정격속도의 115% 이상의속도 및 다음의속도미만에서작동되어야한다. (이하생략)</p>
<p>4.9항 3.2.1.1 <u>승강장문은정상운전중에이탈 기계적끼임또는 동작끝단에서의벗어남을방지할수 있어야한다. 가이드가마모 부식또는화재로인해못쓰게될수 있는 경우에는승강장문을 계 위치에 유지되게하기 위하여비상안내장치기구비되어야한다.</u></p>	<p>4.9항 3.2.1.1 <u>승강장문은정상운전중에이탈 기계적끼임또는 동작끝단에서의벗어남을방지할수 있어야한다.</u></p>
<p><신설></p>	<p>4.9항 3.2.1.3 승강장문의가이드슈는3.1.2(6)④에 의한충격시험시 확인된깊이 이상문턱에맞물려야한다. 화물용은제외한다.</p>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탈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고시시행전에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중인 거나 건축허가가 낀 행중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승강기 검사기준 1.2(6)④, 3.1.2(6)⑤, 3.1.6(2), 3.4.6(2), 3.5.6(2), 4.1.3(18)②, 4.1.5(14), 4.3.2(4) 와 3.9항 의 7.2.4, 7.4.2.4 및 4.9항 의 3.2.1.3항 은 이 고시시행일이후 1년이 경과한 날 의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
- ③ 건축허가분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중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이 고시시행일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2(1)을 시행한다.